

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 및 지역특화비자사업 교류·협력 협약서

함양군, 마산대학교 (이하 “협약대상” 이라 한다.)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 및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여 지역인재 양성-취창업-지역정주와 지자체-대학 간 상호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협약의 목적) 이 협약은 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 및 지역특화비자사업의 실천전략 방안 마련을 위하여 상호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내용) 이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.

1. 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 기반 보건의복지, 관광, 외국인 분야 등 지역맞춤형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
2.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외국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, 성과 공유·확산 활동에 대한 공동 협력
3. 기타 본 협약에 부합한 제반 사업 또는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
제3조 (실무협의) 협약 체결 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구체적인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4조 (비밀유지 및 홍보) 협약대상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기밀 및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으며, 공동 협력사업의 성과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홍보한다.

제5조 (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제6조 (협약변경)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혹은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협약대상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약 내용이 변경 혹은 해지되는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

협약대상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를 작성·날인하여 각 협약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02월 28일



총장 이 학 진



군수 진 병 영

함양군

